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서영교 · 김승원 · 박희승
임오경 · 장종태 · 서미화
박지원 · 박균택 · 남인순
채현일 · 김 윤 · 이재관
최혁진 · 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각종 통신·금융 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전
체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변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통신·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
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
는 이른 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
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
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

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사기이용 계좌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및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및 “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두고, 대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바.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고,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8조).
- 사.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 및 그 밖의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벌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 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함(안 제21조).

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범죄 경력정보 및 전과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법원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나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수익이 1백만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범죄수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습범은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7조).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등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및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중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

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범한 행위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범한 행위

2.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
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피해자”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6. “피해금”이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용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디지털다중
피해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부의 책무

제4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에 따른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3.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대책과 수사·교육·홍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④ 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예보·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 정부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환경 조성

제8조(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신고의무) ①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범행수단의 유통·판매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피해구제 등

제14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금융회사의 조치와 피해구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준용) ①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체 또는 송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조치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3.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금융회사의 협조 조치 등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②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한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조치 및 그 밖의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벌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제15조의2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및 제18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본다.

제5장 수사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 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

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제
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8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15
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다중피해
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다중피해
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
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9조(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 작성 등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범죄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등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2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 법원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25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28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24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5조제5항

· 제6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범죄 경력정보

2. 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저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저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
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33조
에 따른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
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20년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15년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부과받은 제33조에 따른 공개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4. 등록기간 중 제40조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33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28조에 따른 등록기간(이하 “공개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
2. 제1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한 사항, 실명인증과 공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송부와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비밀준수) ① 등록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37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상습적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접근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5조제4항(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디지털 다중피해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제3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